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4년 문화관광체육국 자체감사 —

2024. 4.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통보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정	금액
계			0	3	5	1	128	0	0	0	0
1	☆☆☆☆과	☞☞☞☞☞ 사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	1	-	-	-	-	-	-	-
2	☆☆☆☆과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	1	-	-	-	-	-	-	-
3	○○○○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정산 부적정	-	-	1	-	-	-	-	-	-
4	○○○○과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	-	1	-	1	128	-	-	-	-
5	◇◇◇◇과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	1	-	-	-	-	-	-
6	▼▼▼▼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	1	-	-	-	-	-	-
7	▼▼▼▼과	지방보조사업 공모 미실시 및 여비 공통기준 미적용	-	-	1	-	-	-	-	-	-
8	◎◎◎◎과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정산 부적정	-	-	1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1. ♣♣♣♣♣ 사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시정)	1
2.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시정)	4
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 부적정(주의)	6
4.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시정)	8
5.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1
6.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주의)	13
7. 지방보조사업 공모 미실시 및 여비 공통기준 미적용(주의)	15
8.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정산 부적정(주의)	1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사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경상북도 ♣♣♣♣♣ 의 공연지원 및 행정업무에 종사할 사무원을 2023.05.26. 모집 공고하였고,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2023.08.01. 1명을 위촉하였다.

1.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사무원 모집 공고시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에서는 ♣♣♣♣♣ 사무원 모집 공고 시 제출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재하고, 구직자 12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집하였다.

2. 채용서류 접수 방법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서류 접수 받는 방법을 직접 방문 및 우편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접수여부를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에서는 ♣♣♣♣♣ 사무원을 공개채용 하면서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는 노력 없이 직접 방문과 우편 접수로 한정하였고, 모집 공고문에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3. 응시 수수료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하고,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 제3조는 도에 납부하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축산물, 소방시설, 위험물 안전검사 수수료,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그밖의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고, 법령, 조례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아닐 경우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에서는 법령, 조례 규정에 근거 없이 ♣♣♣♣♣ 사무원 응시원서에 경상북도 수입증지 5,000원을 첨부하도록 했다.

4. 미채용자 채용서류 파기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목적 달성 후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미채용자의 채용서류는 파기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과에서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미채용자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표] 미채용자 채용서류 파기 여부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과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 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채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용서류는 파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의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하고,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원인행위)을 하며,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 지출)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4조에 의하면 지출원은 과오납 하거나 일상경비등이나 개산급의 정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출을 해야하고, 과오납한 경우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반납해야 하며,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카드 대금 청구된 1건에 대한 지출을 하지 않았으며, 카드 결제 취소한 3건에 대한 반납을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 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검사를 실시 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결제 예정금액을 제외한 잔액 46,060원이 남아 있다.

【표】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 내역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카드 대금 지출 및 세출 취소가 발생한 건에 대한 당해연도 반납, 법인카드 계좌의 주기적인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 등 187,060원을 세외수입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문회의 참석수당 등 원천징수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경북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표1] 같이 ‘◆◆◆◆◆◆◆◆ ◆◆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표 1] ◆◆◆◆◆◆◆◆ ◆◆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내용 생략-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의하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를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의하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때 125,000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경비 100분의 60을 공제한 금액의 20%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125,000원 이상의 수당 6건, 1,460,800원에 대해서 소득세 116,860원, 지방소득세 11,680원, 총 128,54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원천징수 미공제 현황

- 내용 생략 -

그 결과, ◆◆◆◆◆◆◆◆ ◆◆ 자문회의 참석자에게 지급된 참석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28,540원이 원천징수 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참석수당 등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28,54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과 관련된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용역 등 계약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기준 및 교부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기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21 ~ 2022 ■■■■■■ 보조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에서 수행한 3건의 계약이 지정정보처리장치 (g2b)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의 견적만을 수기로 제출받아 수의계약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정산 완료 처리하였다.

[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 제출 받지 않은 계약 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장
내 용

▼▼▼▼▼과에서는 원활한 행정 활동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1조 제1항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항목을 구분하되,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등을 기재하여 최소 매 분기마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과에서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 후 1개월 내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물품의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기관·시책 등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특산품 등 총 5건, 2,370,000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특산품 등 구매내역 중 관리대장 미기재 내역

- 내용 생략 -

그 결과, 구매한 물품의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지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특산품 등 구매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사업 공모 미실시 및 여비 공통기준 미적용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에 [표1]과 같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2021년 ♠♠♠♠♠♠♠♠ 보조금 교부 현황

- 내용 생략-

1. 보조사업 공모 미실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하며, 다만,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할 때 상기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과에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제1항1)을 근거로 상기 1호(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로부터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 여비 공통기준 미적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III.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에 따르면 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르면 지급구분²⁾ 제1호의 식비는 1일당 25,000원, 숙박비는 1박당 실비를 지급하고 제2호는 1일당 식비는 20,000원,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출장여비 지급단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사업종료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식비와 숙박비 등을 제시한 출장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리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사업
 3.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인력양성 및 교육 <개정 2017.12.28.>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19.>

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름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에 지방보조사업 출장여비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가 내부 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해 아래 [표2]와 같이 여비를 433,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였다.

[표2] 지방보조사업 출장여비 집행현황
- 내용 생략 -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시고, 출장여비 등은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